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석완주¹, 박경호^{2*}

¹송실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 ²송실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An Influence of Introduction of Full-time Quality Control Personnel System On Audit Quality

Wan-Joo Sug¹, Kyoung-Ho Park^{2*}

¹Ph.D Student,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품질관리업무 전담자 제도 도입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주요 내용인 품질관리제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사품질은 선행연구를 따라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과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과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 전후 즉, 2015 회계연도 이전과 2016 회계연도 이후의 감사품을 비교하여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 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이 도입 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품질관리전담자, 감사인등록제, 감사인지정, 감사품질, 감사인규모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an introduction of full-time quality control("QC") personnel system in audit firms influences on audit quality and verify how important it is to establish the quality control system for auditing quality. We measure audit quality as the level of discretionary accruals and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audit firms with QC and without QC. In addition, we analyze the difference in audit qualities between before and after activating the full-time QC personnel system by comparing audit quality of before 2015 with that of after 201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udit quality is higher when audit firms have QC personnel. Second, the audit quality is improv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full-time QC personnel system.

Key Words : Full-time Quality Control Personnel, Audit Firm's Registration, Assign Auditor, Audit Quality, Auditor Siz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업무 전담자 배치 제도' 도입이 감사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 산업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2016년 12월부터 일정 규모 기준 이상의 회계법

*This article is excerpted and extended from Sug's master thesis(Soongsi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Kyoung-Ho Park(atoz9@ssu.ac.kr)

Received May 12, 2021

Accepted September 20, 2021

Revised August 12, 2021

Published September 28, 2021

인은 의무적으로 품질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회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2016년까지 중·소형 회계법인인은 품질관리실 조직은 있으나 일부 회계법인인을 제외하고는 품질관리 전담자 없이 감사업무수행이사 간에 상호 리뷰를 하는 형식으로 감사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공회는 감사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 규모 기준 이상의 회계법인인은 품질관리 전담자를 배치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이것은 품질관리 전담자가 있는 회계법인이 계약, 교육, 보고서 심리, 사후 모니터링 등 내부 품질관리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여 품질관리 수준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중·소형 회계법인도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기준 충족을 위해 법인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1], 규모 확대에 따른 법인의 감사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품질관리 전담자를 둘 유인이 커지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손쉬운 방법인 중·소형 회계법인간 합병을 추진하여도 운영 방식이 서로 다른 회계법인간의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감사품질의 균일화를 위해 품질관리 전담자 배치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영향을 주는 회계법인 내부의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내부 심리시간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2]와 회계법인의 조직 형태에 따라 법인의 품질관리수준에 차별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감사품질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연구[3]가 있고, 감사품질과 감사보수가 직급별 감사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4]가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품질관리실의 내부심리시간이 감사품을 제고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지만 품질관리실의 역할은 품질관리 전담자의 존재 여부에 의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소형회계법인에도 품질관리실은 존재하지만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품질관리실에 품질관리 전담자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이 전반적으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회계법인 규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다는

실증결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의 도입 후 감사품질이 도입 전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며, 특히 제도의 주된 시행 대상인 중형회계법인에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품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의 감사품질 향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주로 품질관리실 자체의 감사품질 효과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고, 감사품질의 요인에 관한 연구를 품질관리전담자까지 확장하였다. 또한,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을 향상시켜 피감사기업의 분식회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요건 중 일정 기준 이상의 품질관리 제도를 유지하는 회계법인만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자는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있다.

1.2 연구의 구성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이고, 제2장은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기술한다. 제3장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의 설계, 변수의 선정과 측정 및 표본 선정과 자료 추출을 기술한다. 제4장은 실증분석과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제5장은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에 대해 기술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2.1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미국은 2000년대 초 엔론(Enron)의 대규모 회계분식 사건 후 PCAOB를 중심으로 회계 관련 개혁입법을 추진하여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도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기업에는 감사위원회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였고, 감사인에게는 업무수행이사 연속감사 금지, 감사인지정제 확대, 비감사서비스 제한 등을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공인회계사법”에 포함시켜 외부감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대형 분식회계사건이 발생하자, 결국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학계, 업계, 기업, 규제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확산되어 회계 산업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

1)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품질관리 전담자 조항을 신설하여 해당 회계법인은 2016년 12월 3일 이후는 품질관리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2017년말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2020회계연도부터는 상장회사와 비상장대기업(소유와 경영이 미분리)은 예외 없이 감사인을 6년 자유선임한 후 3년 동안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등록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게 되었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 기준을 통과한 등록회계법인만 상장사 회계감사를 하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되었고, 현재 40개의 회계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한공회에서 2016년부터 시행한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는 이후 감사인 등록제의 주된 내용으로 도입되었다. 중·소형 회계법인은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워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반대하였으나 회계감사에 있어서 품질관리의 중요성은 강조할 수밖에 없어 등록제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와 운영책임을 부여하고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이사도 징계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2.2 선행연구의 검토

2.2.1 품질관리수준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Choe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공회의 품질관리 감리결과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법인의 특성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있어 중·대형회계법인과 소형회계법인 간에 체계적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중·대형회계법인은 Global 회계법인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파트너십이 아닌 일반 기업과 같은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 1인당 감사고객 수가 적은 경우와 파트너 중 이사 비율이 높은 경우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소형회계법인은 상장기업에 대한 감사비중이 높을수록 감사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때문에 품질관리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연구결과는 품질관리 수준과 감사품질은 체계적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시사하였다.

2.2.2 회계법인의 규모 및 기업의 조직형태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주장의 근거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회계법인은 감사실패 시 소송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감사실패 방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Big4 회계법인은 우월적인 명성으로 타법인에 비해 차별적인 보수 프리미엄을 지속하기 위하여 감사품질을 높게 유지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런 유인들 때문에 대형 회계법인인 Big4들이 Non-Big4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5,6].

한편, 피감사기업의 조직형태와 감사품질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피감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일수록 내부회계관리의 수준이 높고,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외부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영자는 자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Big4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회계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신호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7].

2.2.3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선행연구 중 Ryu et al.(2015)의 연구는 감사인의 노력을 감사시간과 내부심리시간으로 측정하여 감사품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내부심리시간이 기업의 이익조정을 통제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을 강화하면 감사품질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직급별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4,8]. 이 연구들은 직급별 감사시간 중에서 특히 품질관리실의 감사시간은 등록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과 같이 재량적 발생액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지만 다른 직급(담당이사, 수습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시간은 감사품질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회계법인 차원의 품질검토시간비율이 증가하면 감사업무 경험이 적은 감사파트너 담당 회사의 재량적 발생액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9]. 이 연구결과들은 감사품질의 향상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감사품질에 대한 선행연구는 감사인의 양적 특성(감

사인 규모, 감사시간 등)과 피감사기업의 특성(대기업 여부 등)이 감사품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회계법인의 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품질관리수준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품질관리수준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품질관리실의 역할, 특히 내부심리시간이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2,4].

하지만 중·소형회계법인의 경우, 대형회계법인과 마찬가지로 품질관리실을 설치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품질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회계사를 두지 않고, 대신 감사수행이사들이 상호 리뷰를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소형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 설치의 제대로 운영되는 품질관리체도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이 때문에 회계실무를 잘 알고 있는 한공회는 중·소형회계법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전담자를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도의 목적은 당연히 감사품질의 향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품질관리 전담자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전담자의 존재 여부와 제도 시행 전후 기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품질관리 전담자가 있는 회계법인과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을 구분하고 두 그룹 간의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의 시행 이후 감사품질이 개선되었는지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감사품질의 개선 여부를 Big4와 Non-Big4 여부와 소속 공인회계사 인원을 고려한 규모별로 표본을 세분화하여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의 효과의 차별성도 분석하였다.

3. 연구설계

3.1 가설의 설정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실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품질관리 전담자의 배치 여부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계법인 분류기준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Audit Firms

	number of CPAs and auditing firms	Supervisor ²⁾
Big firm	30 or more CPAs	FSS
Middle firm	20~29 CPAs + over 3 firms	KICPA
Small firm	under 20 CPAs	KICPA

회계법인은 대부분 감사업무수행이사를 중심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를 수행하는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감사수행이사의 책임과 권한이 중요한 조직이다. 감사수행이사는 오랜 실무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이기 때문에 Big4 회계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계법인들은 준수해야 할 공통의 규정 이외의 의사결정은 업무수행이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감사업무의 수행도 업무수행이사의 인적특성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많다. 따라서 회계법인간의 합병 등으로 인해 소속 인원이 증가하고 감사업무수행이사가 다양해지면 이에 따른 감사위험이 증가하게 되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감사위험은 품질관리실이 관리하며, 감사계약과 감사계획, 감사수행, 감사조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심리를 통해 수행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품질관리실의 내부심리시간과 직급별 감사시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2,4,8]. 하지만 품질관리실의 내부심리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대형회계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자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품질관리실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감사위험이 증가하고 감사품질 관리가 취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중·소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심리를 업무수행이사 간의 상호 리뷰를 통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품질관리실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품질관리실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감사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조직에 품질관리 전담자의 존재 유무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품질관리 전담자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내부심리시간이 증가하고, 사전에 감사위험을 독립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2) FSS: 금융감독원, 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수행하기 때문에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일수록 감사품질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할 것이다.

중·소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공회에서는 2016년 12월 3일부터 소속회계사가 20명 이상이면서 상장사 감사개수가 3개 이상인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품질관리 전담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감사인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신설하였다. 이 규정 신설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은 2016 회계연도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부터 품질관리 전담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이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전담자를 두어야만 하는 회계법인은 총 62개사였고, 대형회계법인 등 기존에 품질관리 전담자가 있던 회계법인을 제외한 약 20개 회계법인(중형회계법인)이 신규로 품질관리 전담자를 선임하게 되었다. 회계법인 규모별 품질관리 전담자의 선임여부는 아래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Full-time QC personnel

	Before	After
Big firm	Yes	Yes
Middle firm	No	Yes
Small firm	No	No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은 회계감사를 수행하지 않고 회계법인 내부에서 품질관리 업무에만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의 도입으로 내부심리시간이 증가하고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감사품질이 균일화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 후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평균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 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이 도입 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할 것이다.

3.2 연구모형의 설계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모형으로 식 (1)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감사품질의 측정은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였으며, 관심변수로는 품질관리전담자 유무(또는 품질관리전담자제도 도입 전후) 더미변수를 사용하였고,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수들(BIG4, 기업 규모, 자산성장율,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외국인지분율, 전기총발생액, 초도감사)과 연도 및 산업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DA_t = \beta_0 + \beta_1 QCPT_t(QCPTYR_t) + \beta_2 BIG4_t + \beta_3 SIZE_t + \beta_4 GROWTH_t + \beta_5 LEV_t + \beta_6 CFOA_t + \beta_7 FORN_t + \beta_8 TACC_t + \beta_9 F_AUDIT_t + \beta_{10} \Sigma YD + \beta_{11} \Sigma IND + \epsilon_t \quad (1)$$

여기에서,

DA: 재량적 발생액으로 감사품질의 대용치

QCPT: 품질관리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

QCPTYR: 품질관리전담자제도 도입 후면 1, 도입 전이면 0

BIG4: 감사인이 Big4 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

SIZE: 기업규모

GROWTH: 자산성장율=(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전기총자산

LEV: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CFOA: 영업현금흐름 = 당기 영업현금흐름/총자산

FORN: 외국인지분율

TACC: 전기총발생액

F_AUDIT: 해당연도가 초도감사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

ΣYD: 연도더미,

ΣIND: 산업더미

가설 1을 검증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전담자 유무(QCPT)가 관심변수이며, 가설 2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전담자제도 도입 전후를 나타내는 변수(QCPTYR)가 관심변수이다.

회귀분석 결과, 관심변수의 계수인 β1이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면 가설 1과 가설 2는 지지되는 결과이다.

3.3 변수의 선정과 측정

본 연구에서 감사품질의 대용치는 수정 존스모형 [10]을 사용한 재량적 발생액(DA)으로 측정하였으며,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BIG4는 감사인이 Big4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변수이다. 기업규모(SIZE)는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이분산성을 완화시켰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이익조정 상향 유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성장률(GROWTH)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부채비율이 높으면 채무위험이 높아 부채상환 압박을 줄이기 위해 이익을 상향 조정할 유인이 있다는 부채계약가설에 따라 부채비율(LEV)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기업의 경영성과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FOA)변수를 선정하여 통제하였고, 기업지배구조가 이익조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지분율(FORN)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전기에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당기 반전효과 가능성 때문에 전기총발생액(TACC)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초도감사 시 피감사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 또는 독립성 향상의 이유로 기업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도감사 여부(F_AUDIT)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연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더미(ΣYD)를, 산업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산업더미(ΣIND)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3.4 표본의 선정과 자료 추출

기업의 재무자료는 KIS-VALUE에서 추출하였고, 표본의 비교가능성과 실증결과 해석의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서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 관리종목 지정 기업, 자본잠식 기업 및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은 제외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이며 이에 따른 최종표본은 9,148개의 기업/연도이다.

회계법인의 회계사 수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상장회사 수 등 회계법인에 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시되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최종표본을 회계연도와 회계법인 구분에 따라 구분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Sample Composition by year/auditor

year	Audit firms			
	Big	Middle	Small	Total
2014	1,523	81	106	1,710
2015	1,579	92	101	1,772
2016	1,636	92	105	1,833
2017	1,678	81	136	1,895
2018	1,683	92	163	1,938
Total	8,099	438	611	9,148

4. 분석결과

4.1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단, 극단치(outlier)가 실증분석 결과를 왜곡하는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변수별로 상·하위 1%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극단치로 간주하여 Winsorization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ean	S.D.	min	p25	median	p75	max
DA	-0.0004	0.118	-1.000	-0.043	-0.000	0.042	1.000
QCPT	0.914	0.280	0.000	1.000	1.000	1.000	1.000
BIG4	0.499	0.500	0.000	0.000	0.000	1.000	1.000
SIZE	25.774	1.418	22.750	24.851	25.575	26.481	30.359
GROWTH	0.130	0.355	-0.402	-0.018	0.045	0.153	2.398
LEV	0.376	0.206	0.028	0.205	0.370	0.528	0.924
CFOA	0.049	0.118	-0.476	0.001	0.047	0.102	0.469
FORN	6.127	10.056	0.000	0.440	1.900	6.860	52.610
TACC	-0.024	0.122	-0.483	-0.071	-0.023	0.018	0.410
F_AUDIT	0.222	0.416	0.000	0.000	0.000	0.000	1.000
N	9,148						

Table 4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종속변수인 감사품질 변수 DA의 평균은 -0.0004로 나타났으며, 관심변수인 QCPT의 평균은 0.914로 품질관리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이 감사한 상장기업 비율이 91.4%임을 나타냈다.

통제변수를 보면, BIG4의 평균이 50%이므로 표본 기업/연도 중 약 절반이 Big4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았다.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SIZE의 평균은 25.774(자연로그값)이고, 성장성을 나타내는 GROWTH(자산성장률)의 평균은 13%이며, 채무위험을 나타내는 LEV(부채비율)은 평균 37.6%로 나타났다. FORN(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은 6.127%이며, F_AUDIT(초도감사)의 경우는 평균 22.2%로 나타나 표본 중 약 22% 정도가 교체된 감사인으로 부터 감사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DA와 본 연구의 주된 관심변수인 QCPT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02214 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고, 스피어만 상관계수도 -0.0235 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즉, 품질관리전담자 유무와 감사품질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상관관계 분석은 인과관계 분석과 달리 다른 통제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가설 검증은 회귀분석을 이용해 수행하였다.

4.2 실증분석 결과

4.2.1 품질관리전담자와 감사품질

품질관리전담자 유무와 감사품질 간의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The result of test of Hypothesis 1

variable	coefficient	t-value	Pr > t	VIF
Intercept	-0.1870	-7.27***	<.0001	0
QCPT	-0.0101	-2.45**	0.0143	1.1100
BIG4	-0.0010	-0.42	0.6762	1.2740
SIZE	0.0094	9.47***	<.0001	1.6520
GROWTH	0.0566	17.75***	<.0001	1.0617
LEV	-0.0663	-11.70***	<.0001	1.1242
CFOA	-0.3294	-34.26***	<.0001	1.0627
FORN	0.0001	0.37	0.7097	1.4329
TACC	0.2254	24.90***	<.001	1.0179
F_AUDIT	0.0033	1.21	0.2308	1.0557
YD	included			
IND	included			
F Value	164.85***			
Adj R-Sq	0.2005			
N	9,148			

QCPT is an indicator variable that equals 1 if audit firms have QC personnel and 0 otherwise.
 ***: p<0.01, **: p<0.05 , *: p<0.1
 Multicollinearity is not expected because all variables show under 10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품질관리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과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 DA와 관심변수 QCPT 간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0.0101)이 나타났다. 이는 “품질관리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할 것이다”라는 가설 1을 지지하는 실증결과이며, 통제변수들도 대부분 유의한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다.

4.2.2 품질관리전담자 제도 도입과 감사품질

품질관리전담자 제도 도입 후 감사품질이 개선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 기간을 제도 도입 전인 2014년+2015년과 제도 도입 후인 2016년~2018년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가 2016년 연말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2016년에는 대상이 되는 회계법인이 품질관리 전담인력 확보할 시간이 부족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분석 기간을 2015년과 2017년 이후로 설정한 실증분석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 The result of test of Hypothesis 2

variable	2014+2015 vs 2016~2018		2015 vs 2017+2018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Intercept	-0.1915	-7.45***	-0.2243	-6.52***
QCPTYR	-0.0137	-3.9***	-0.0078	-2.45**
BIG4	-0.0033	-1.38	-0.0070	-2.20**
SIZE	0.0096	9.63***	0.0108	8.08***
GROWTH	0.0571	17.89***	0.0386	9.28***
LEV	-0.0676	-11.92***	-0.0651	-8.54***
CFOA	-0.3316	-34.43***	-0.3194	-24.93***
FORN	0.0000	0.44	0.0001	0.86
TACC	0.2264	25.02***	0.2773	22.91***
F_AUDIT	0.0039	1.43	0.0052	1.46
YD	included		included	
IND	included		included	
F Value	136.58***		99.9***	
Adj R-Sq	0.2013		0.1981	
N	9,148		5,605	

QCPTYR is an indicator variable that equals 1 if the sample period is applicable to the yea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QC personnel system and 0 otherwise.
 ***: p<0.01, **: p<0.05 , *: p<0.1

2015년 이전과 2016년 이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QCPTYR의 회귀계수값은 -0.0137로 1%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후 감사품질의 개선이 있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2015년과 2017년 이후를 비교한 분석에서도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값(-0.0078)으로 나타나 감사품질의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결과는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실시로 감사품질의 개선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회계법인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3 회계법인의 규모별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 전후 감사품질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제도

의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중형회계법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7. The result of test of hypothesis 2 by auditor size

auditor	statistics	2015 vs 2016	2015 vs 2017+2018	2014+2015 vs 2016~2018
middle	coefficient	-0.03059	-0.04662	-0.03278
	t-value	-2.49**	-3.29***	-3.58***

Table 7은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의 실질적 적용 대상 그룹인 중형회계법인 표본만을 이용한 분석결과이다.

제도 도입 직전과 직후 연도인 2015년과 2016년에 대한 분석에서는 관심변수인 QCPTYR의 계수값이 -0.03059으로 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고, 2015년과 2017년 이후에 대한 분석에서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0.04662)을, 그리고 2015년 이전과 2016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분석에서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0.03278)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의 도입이 감사품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표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대형회계법인의 경우에는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시행 전에도 이미 품질관리 전담자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 도입 후에도 감사품질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의 실질적 대상인 중형회계법인은 제도 도입 전에는 전담자가 없었으나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품질관리 전담자를 배치함으로써 감사품질의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6과 Table 7의 결과는 모두 “품질관리전담자 제도 도입 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이 도입 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4.3 추가분석

4.3.1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분류

코스피시장에는 업력이 길고 재무적으로 우량한 대기업이 많이 있으며 우수한 내부회계인력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기업의 회계품질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코스닥시장에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지만 업력이 짧고 내부회계인력의 확보도 원활하지 못하여 회계품질이 낮기 때문에 감사인의 역할과 품질관리

전담자의 역할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표본을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기업으로 나누어 가설 1을 추가 검증하였으며, 요약된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Table 8. Additional analysis(KOSPI vs KOSDAQ)

variable	KOSPI		KOSDAQ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QCPT	0.00506	0.71	-0.01505	-2.92***

코스피시장에서는 품질관리전담자가 존재하는 법인과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법인 간에 감사품질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코스닥시장에서는 QCPT의 계수값이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0.01505)을 보여서 코스닥시장에서는 품질관리전담자 유무가 감사품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3.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류

상장기업 중 대기업은 자산 규모가 크고,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수한 내부회계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회계품질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소기업은 자산과 매출 규모가 작고 인원도 부족하며, 특히 내부회계인력의 확보도 쉽지 않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계품질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일수록 감사인의 역할과 품질관리전담자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표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가설 1을 추가 검증하였으며, 요약된 결과는 Table 9에 제시하였다.

Table 9. Additional analysis(Large vs SME)

variable	Large firms		SME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QCPT	0.00696	1.3	-0.01963	-3.12***

대기업은 품질관리전담자가 존재하는 법인과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법인 간에 감사품질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에서는 QCPT의 계수값이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0.01963)을 보이고 있어서 중소기업에서는 품질관리전담자 유무가 감사품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

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품질 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 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이 도입 전 회계연도의 감사 품질보다 우수하며 주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제도의 영향을 받은 중형회계법인에서 감사품질이 개선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향상시켜 피감사기업의 분식회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의 주요 요건인 품질관리 조직의 강화가 적절한 방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는 한공회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되었으나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요건으로 품질관리기준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품질관리 전담자 배치의 효과가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에 생략된 변수(omitted variables)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재정적 발생액 측정치들은 측정오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한계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S. C. Joung. (2017.6.2). Accounting firm, are you experiencing a quality control crisis? *Etoday*, p. 23. (Online)https://www.etoday.co.kr.

[2] S. W. Ryu, J. C. Lee, E. G. Kim & S. S. Han.(2015). Effect of Total Audit Hour and Internal Quality Assurance Hour on Audit Quality(Discretionary Accrual). *Korean Accounting Review*, 40(4), 213-246.

[3] J. Y. Choe, Y. S. Cheon, M. C. Kim & M. H. Hwang. (2013). Audit Firm Characteristics and Quality Control System. *Korean Accounting Journal*, 22(3), 297-328.

[4] Y. S. Kim & K. A. Jeon. (2016). The Effects of the Position-specific Audit Hours on Audit Quality and Audit Fees. *Korean management review*, 45(4), 1339-1375.

[5] Y. S. Koh & H. J. Choi. (2014). Reconsideration of the Audit Quality in accordance with Auditor Size.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15(2), 143-177.

[6] L. E. DeAngelo.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 35-59.

[7] J. W. Yoon. (2016). Audit Quality and Fee Premium for Big4 in KOSDAQ Market.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34(2), 417-439.

[8] G. S. Bae, J. E. Lee, J. H. Roh & S. W. Choi. (2015). Auditors' Differential Responses to Audit Risks Through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Korean Accounting Review*, 40(6), 81-117.

[9] D. S. Jeong & J. E. Lee. (2019). Effects of Engagement Partner's Audit Experiences on Audit Quality, as Combined with Auditor Quality Controls at Engagement- and Audit Firm-Levels.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10] P. Dechow, R. Sloan. & A.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193-225.

석 완 주(Wan-Joo Sug)

[정회원]



- 1990년 2월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 2018년 8월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회계석사)
- 2018년 9월 ~ 현재 : 숭실대학교 박사과정

- 1997년 9월 ~ 현재 : 삼화회계법인 대표이사
- 관심분야 : 회계감사, 비영리회계
- E-Mail : wjsug@shcpa.co.kr

박 경 호(Kyoung-Ho Park)

[정회원]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 1999년 2월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경영석사)
- 2010년 8월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경영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재무회계, 회계감사
- E-Mail : atoz9@ssu.ac.kr